

● 계약직근무평가세칙(040506)

제정 2002. 12. 9. 시행세칙 제 84호
 개정 2003. 10. 15. 시행세칙 제 99호
 개정 2004. 6. 9. 시행세칙 제120호
 개정 2004. 6. 9. 시행세칙 제120호
 개정 2007. 1. 29. 시행세칙 제191호
 개정 2007. 3. 28. 시행세칙 제212호
 개정 2007. 7. 19. 시행세칙 제223호
 개정 2016. 6. 1. 세칙 제441호
 개정 2020. 12. 30. 세칙 제550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직관리세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원의 계약직 임직원(이하 “계약직원”이라 함)의 업무추진능력과 근무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적급제와 재계약의 근거로 활용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3.28, 07.7.19>

제2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삭제 07.7.19>
 ② 근무실적평가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07.7.19>
 ③ 위원회는 자체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07.7.19>

제4조(근무실적평가 시기) 계약직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는 수시평가와 최종평가로 한다.

1. 수시평가 : 연봉액의 조정 등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및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최종평가 : 계약기간 만료시 (만료 30일전)

제5조(근무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 ① 근무실적평가는 “별지2”의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하되, 평가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이 “D”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의 비율은 “C”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04.6.9>

- | | |
|-----------------|----|
| 1. A(95점이상) | 2할 |
| 2. B(90점~95점미만) | 4할 |
| 3. C(80점~90점미만) | 3할 |

4. D(80점미만) 1할
- ② 평가단계는 “별지3”의 성과목표평가서 양식에 따라 1차평가, 2차평가, 최종평가의 3단계로 구분한다.
- ③ 1차평가자는 운영부서 담당부장, 2차 평가자는 운영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03.10.15, 20.12.30>
- ④ 위원회는 당해 직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목표달성도 외에 근무태도 등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6.6.1>
- ⑤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은 “별지 1”의 세부근무실적평가지침에 의한다.
- ⑥ 제2조 제3항에 의거 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근무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은 위탁한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근무실적평가서는 “별지3”의 성과목표평가서 양식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작성하여 소속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장은 세부추진실적에 대한 실적확인 및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1차 평가자인 운영부서의 총괄서무 담당부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03.10.15, 07.1.29>

제6조(평가등급 및 처리기준) 근무실적평가등급 및 결과처리기준은 “별지 1”의 세부근무실적평가지침에 의한다. <개정 03.10.15>

제7조(근무실적평가요구) 인사부서장은 운용부서로부터 평가대상자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 1차 및 2차 평가서를 제출받아, “별지4의 근무실적평가심사요구서의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최종평가를 요구한다. <개정 03.10.15, 04.6.9>

제8조(평가결과 보고) ① 위원장은 심사평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장은 전항의 심사평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기타 본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제한) 심사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02. 12. 9>

제1조(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 제1조 시행일로부터 전문직근무실적평가시행세칙으로 적용받던 사항은 이 시행세칙으로 적용받는다.

부 칙<03. 10. 15>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6. 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 2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 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7. 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제5조 관련)】 <개정 03.10.15, 07.3.28, 07.7.19>

세 부 근 무 실 적 평 가 지 침

I. 평가절차

1. 계약당시의 성과계획서에 따라 1년 단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계약기간)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2. 성과목표는 관리책임자와 계약직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한다.
3.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성과목표평가서를 3부 작성하여 계약직, 운영부서장 및 과부장(임원일 경우 차상급자)과 인사부서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이 세칙 시행전 입사자는 이 세칙에 의거 소급하여 적용한다.
4. 계약직의 성과목표는 성격상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부서장(임원일 경우 차상급자)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5. 평가점수 부여방법 (예시)

성과단위목표	평가비중(A)	평가점수(B)	점수(C=A×B)
제1목표	50%	100	50
제2목표	30%	100	30
제3목표	20%	100	20
계	100%	-	만점(100점)

※총점은 C(=A×B)로 함

II.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처리기준

등 급	최종평가점수	처리기준
A(탁월)	95점 이상	1.위원회에서 1차,2차 평가점수 및 경영여건(사업물량, 인력소요,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대상자의 재계약 여부를 최종결정함 2.성과계획서,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계약직원의 근무실적 평가점수는 D등급으로 하며 재계약대상에서 제외함
B(우수)	90~95점 미만	
C(보통)	80~90점 미만	
D(미흡)	80점 미만	

【별지 2(제5조 관련)】 <개정 20.12.30>

성 과 계 획 서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구 분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기준	③ 추진일정	비 고
제1목표				
제2목표				
제3목표				

① 단 위 목 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 진 일 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작 성 자 : (서 명)

1차 평가자 : (서 명)

2차 평가자 : (서 명)

【별지3(제5조 관련)】 <개정 03.10.15, 20.12.30>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업무

2. 업무성과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구분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기준	③추진일정	④업무비중	달성도평가		
					⑤1차 평가	⑥2차 평가	⑦최종 평가
제1목표							
제2목표							
제3목표							

- ① 단 위 목 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 ③ 추 진 일 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 ④ 업 무 비 중 : 단위목표가 전체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 ⑤ 1 차 평 가 : 운영부서 총괄사무 담당부장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 ⑥ 2 차 평 가 : 운영부서장(임원일 경우 차상급자)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 ⑦ 최 종 평 가 :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계약직의 근무실적내용과 1차평가 및 2차평가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작성 자 :	(서 명)
1차 평가자 :	(서 명)
2차 평가자 :	(서 명)

【별지 4 (제7조 관련)】 <개정 07.3.28>

근무실적평가심사요구서

계약직근무평가세칙에 의하여 다음 계약직에 대하여 평가심사를 요구하오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채용구분	성명	채용계약 기간	담당(예정) 업무	단위목표	업무성과(요약)

- 덧붙임 : 1. 성과계획서 부
2. 성과목표평가서 부

년 월 일

인사위원장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귀하